



#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전면 게재 한다. <편집자 주>

## I. 총괄

### 1. 개정배경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바로 조업정지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폐수배출량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현재 날로 심각화, 다양화 해 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2. 개정목적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
- 기타 누적되어온 환경관리상의 제도적 모순점 해결

### 3. 주요 개정내용

- 행정처분기준의 강화
  -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 및 중급속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강화
- 수질배출허용기준의 규모별 차등화
  - 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로 농도규제기준의 모순점 제거
- 호소 환경기준 추가설정
  -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총인 및 총질소의 환경기준 설정
- 대기배출시설의 추가
  - 카본블랙 또는 카본제품 제조시설, 착화탄 제조시설, 석면·암면 및 유리섬유 제조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 4.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88.9.30 ~ 10.25
- 법제처 심의 : 88.11.1 ~ 11.20
- 공포·시행예정일 : 88.12.1

## II. 행정처분기준 개정안

### 1. 개정안의 기본방향

#### 가.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근절

##### (1) 현 황

방지시설 가동 기피, 무단방류 등 반사회적인 고의성 비정상가동에 대한 제재조치 경미.

- 고의성 위반→경고→허가취소
- 고장·과실 위반: 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

#####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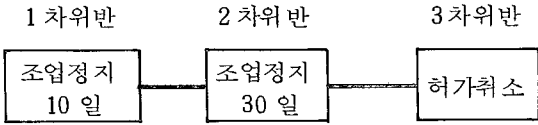
고의성위반의 경우 대부분 경고로 끝나고 실제 허가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어 (예컨대 무단방류로 1년내 2번이상 적발되는 경우 극소), 최초위반부터 개선명령 및 부과금 처분을 당해야 하는 고장·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상실.

##### (3) 개정안의 기본방향

가) 방지시설의 가동기피, 무단방류 등 고의성 비정상 가동.

○ 기본적으로 부과금제도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양하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 직접규제 위주로 대처

○ 처분기준을 최대한 강화하여 경고없이 1차 위반시부터 조업정지 등의 조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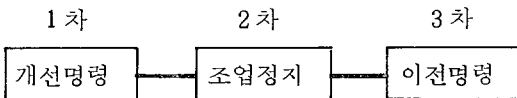
(나) 방지시설의 고장·결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비정상 가동

○ 기본적으로 부과금제도의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이전의 자진신고 관행을 확립하고, 고장 및 결합의 신속한 시정을 강력하게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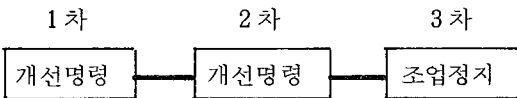
○ 1차, 2차 위반시는 개선명령, 3차 위반시는 조업정지처분 등의 현행기준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되, 개선명령 반복 등의 사례를 시정키 위하여 개선명령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로 완벽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회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규제 조치 발동 기회확대.

\* 현행체계

○ 당해 사업장이 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경우



○ 당해 사업장이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경우



나.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 확보

(1) 위반회수 적용기간 확대

현 행

위반회수를 산입하는 기간이 당해 위반사항이 있는날 이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음.

문제점

○ 1업소당의 지도·점검회수가 연간 2~

3회에 불과함으로 실제로 2차, 3차 위반시는 강화된 처분기준 적용사례 희소

○ 따라서 1차 위반시의 개선명령만 되풀이 되는 사례 빈번 예상.

개정안

○ 위반회수를 산입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 위반회수 산정범위 확대

현 행

○ 같은 목의 위반사항일 경우만 위반회수에 산입

(예) 처분기준 1호(비정상가동을 한 경우)

- (1)목: 처리약품 불투입
- (2)목: 비밀배출부 배출
- (3)목: 오염물질 희석

문제점

위반회수의 불합리한 축소 산정

개정안

같은 호의 위반사항일 경우는 목에 관계없이 위반회수에 산입

(3) 각종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현 행

개선·조업정지·이전·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불이행시의 행정상 제재조치 부재.

개정안

각종 명령의 불이행시 5일간의 경고 기간을 두어 1차 경고처분후 동 기간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토록 명문화.

(4) 조업정지기간의 명시 및 사후관리의 제도화

현 행

○ 조업정지기간이 개선완료일까지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조업정지처분의 개시일과 종료일이 불명.

○ 따라서 조업정지처분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개정안

○ 처분서에 조업정지 개시일과 종료일을 명시.

○ 개선완료예정일이 실제 완료일과 상위 있을 것임이 확인될 때는 정정처분토록 함.

다. 일부규제대상항목의 행정처분기준 누락 보완

현 행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득하였으나 검사 및 적합판정(배출시설 조업허가 상당)을 받지 않고

조업을 개시한 경우의 행정상 제재조치 부재 문제점

불량 방지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운영의 부실화 초래

개 정

적합판정을 받지않고 조업개시한 사실 확인 즉시 1차로 경고처분을 행하고 경고처분후 5일 이내에 적합판정 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 Ⅲ. 기타 주요개정사항

분 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1. 수질환경기준	○ “하천 및 호소”수질 환경기준을 “동일란”에 규정	○ 호소의 경우 환경기준을 하천과 분리하여 별도 설정하고 총인 및 총질소에 관한 기준을 신규로 설정		○ 호소의 특성인 부영양화에 대한 항목중 총인(T-P), 총질소(T-N)의 환경기준을 추가 설정
		○ 폐수배출 규모별 배출 허용 기준의 차등 설정		
2. 수질배출허용 기준의 규모별 차등화 - BOD·COD ·SS의 배출 허용기준	○ 폐수배출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기준 설정 청정지역 : 50ppm이하 (1) 지역 : 100ppm이하 (2) 지역 : 150ppm이하 (3) 지역 : 200ppm이하 특례지역 : 300ppm이하	3천톤/일이상	3천톤/일미만	2. 공단폐수처리 구역 및 농공지구(특례지역 지정)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50ppm이하 80ppm이하 100ppm이하 — 30ppm이하	50ppm이하 100ppm이하 150ppm이하 — 30ppm이하	
3. 배출시설 대상 추가	(신 설)	○ 대기배출시설 추가 - 의약품 제조시설 - 카본블랙 또는 카본 제품 제조시설 - 착화탄 제조시설 - 아스콘 제조시설 등 - 석면·유리섬유 ○ 수질 배출시설 추가 - 식료품 제조시설중 침지시설		○ 대기·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시킴.

분 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4. 배출시설대상 확대			
1) 축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기준만 채택 “예” : 돈사시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역 : 면적 1,400㎡이상</li> <li>· 특별청소지역 : 면적 700㎡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기준에 두수기준 추가 “예” : 돈사시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역 : 면적 1,400㎡이상 또는 사육두수 1,000두 이상</li> <li>· 특별청소지역 및 상수보호구역 등 : 면적 700㎡이상 또는 사육두수 500두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해당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사 : 현재 전체의 30%만 해당</li> <li>· 우·마사 : 현재 전체의 7%만 해당</li> </ul> </li> </ul>
2)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시설과 일반시설로 구분하여 배출시설 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시설 :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폐수배출량 0.1㎡/시간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li> <li>- 일반시설 :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시간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배출시설 해당 범위 확대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시설 : (현행과 같음) 단,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폐수배출량 0.2㎡/일 이상</li> <li>- 일반시설 : (현행과 같음) 단, 상수보호구역 등에서는 폐수배출량 2㎡/일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원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보호구역에서의 배출시설 해당 범위 확대 (현행 기준보다 약 4배 강화)</li> </ul>
5. 배출시설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Ray 필름현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해당규모 : 1셋트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해당 규모 : 2셋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 배출시설 과잉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제거</li> </ul>
6. 방지시설대상 확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방지시설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시설</li> <li>- 산화, 환원시설</li> <li>- 침전물 개량시설</li> </ul> </li> </ul>	
7. 일산화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공급시설, 소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일산화탄소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산화탄소로</li> </ul>

분 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p> <p>8. 시험가동기간 연장(생물화학 적 처리시설은 제외)</p>	<p>및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 적용</p> <p>○ 시험가동기간 : - 수질 : 20일 - 대기 : 10일</p> <p>○ 시험가동기간내에 시험 검사를 완료토록 함.</p>	<p>시설에 적용</p> <p>○ 시험가동기간의 연장 - 수질 : 20일→25일 - 대기 : 10일→25일</p> <p>○ 시험가동기간내 시험검사 완료하고 적합판정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함.</p>	<p>인한 오염규제 강화</p> <p>○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하여 동 기간안에 적합판정 통보 동시 이루어 지도록 조정</p> <p>○ 적합판정 통보 지연으로 인한 시험가동 종료 직후의 조업개시 지연 예방</p>
<p>9.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 적정처리 범위</p>	<p>○ 대상 폐수 - 특정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세 제곱미터 이하인 폐수</p> <p>(신 설)</p>	<p>○ 대상 폐수 - 물리·화학적 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 가능한 1일 폐수 배출량 5세 제곱미터 이하인 폐수. 다만, 아 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 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법 제 4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특별관리 해역에 인접된 내륙의 음·식료품 제조시설 또는 해산물 판매장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p>	<p>○ 현행 고시 규정 사항임</p>
<p>10.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p>	<p>○ 양도·상속,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 변경신고</p>	<p>○ 변경신고 대상 확대 - 사업장 명칭, 대표자</p>	<p>○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동시</p>

분 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확대	대상에서 누락	성명 변경시 신고토록 함. - 배출시설을 양도한 자·상속받은 자의 경우도 신고토록 함.	도 신고토록하여 사업장 관리 강화
11. 공동방지사설 변경승인 절차 누락 보완	(신 설)	○ 공동방지사설 설치 승인사항 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공동방지사설 운영의 철저
12. 허가신청서의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제정	(신 설)	○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작성 환경지청 장에게 송부하는 검토의견서의 양식을 제정함.	○ 의견서 작성 내용 통일로 행정처리 능률 향상

### 本協會 FAX No 안내 및 전화번호 변경안내

本協會가 FAX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총무부 753-7669,7640
- 홍보부 **777-7360**    ■ 홍보관 907-6142
- 개발부 907-5836,908-3410
- 연수부 907-6841
- FAX. (02) **756-6141**

※ 전화번호는 홍보부만 변경됐으며 신설된 FAX.No는 위와 같습니다.(각 지부 전화도 전과 동일)

〈會告〉 주소 변경시에는 꼭 알려주십시오

會報를 받아 보시는 주소지가 이전되시는 本協會 서울本會 및 지방支部에 전화해 주십시오.

☎ 100-743 서울·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의빌딩 12층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el. 777-7360